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장에게 신고 등>

■ 이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58호)

2022.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장애인에 신고 등	3
※ 참고자료	10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훈 · 유정주 · 오영훈 · 박 정 · 이상현 · 어기구 ·
양향자 · 김철민 · 신동근 · 이용우 · 전재수 · 윤영덕 ·
홍성국 · 김영배 의원(14인)

나. 발 의 일 : 2022. 3. 4.

다. 회 부 일 : 2022.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중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점검하기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취업제한 명령을 신고받은 경우 장에게 신고 등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취업제한 명령을 신고받은 경우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6조의2(성범죄자 신고의무)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신고받 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제한 명 령을 신고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퇴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생략) ③ ~ ⑤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¹⁾,

동 제도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고²⁾,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인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³⁾.

1) [참고자료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 5.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각 호 생략)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 1회 점검해왔으며,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원 총 338만 2,478명 중 67명의 성범죄 경력자를 적발하였고 이들에 대해 종사자 해임(39명), 운영자 변경(9명), 기관 폐쇄(19명)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⁴⁾.

그런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된 자가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연 1회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 경력자는 최대 1년 가량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무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 선고 사실의 신고의무 미이행 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됨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먼저 신고 또는 자진 퇴사하

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각 호 생략)

4)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현황 >

연도	점검대상 (개소/명)		점검결과 (개소/명)		조치 사항(명)
	점검기관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17	426,842	2,281,988	21	24	종사자 해임 8, 운영자 변경 4, 기관폐쇄 12
'18	503,591	2,503,777	164	163	종사자 해임 84, 운영자 변경 23, 기관폐쇄 56
'19	543,721	3,172,166	106	108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20	543,398	3,271,506	79	79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1, 기관폐쇄 17
'21	533,315	3,382,478	68	67	종사자 해임 39, 운영자 변경 9, 기관 폐쇄 19

자료: 여성가족부

여 취업제한이 간접적으로 달성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성범죄 경력자의 미신고 사실은 행정기관의 장의 연 1회 점검일
에야 확인이 가능하여 그 전까지 신고 또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최대 1년 가량을 근무하게 되고,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통한 경
제적 이익에 비해 과태료 제재가 경미한 경우 신고 또는 자진 사퇴의 유
인이 크지 않은 등 실익이 작을 수 있음.

또한, 신고의무 기간 또는 자진사퇴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범
죄 경력 조회 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만이 확인될 뿐 취업제한 명령 선
고일은 확인할 수 없어⁵⁾ 성범죄 경력자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 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남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제도의 집행이 실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비롯한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겠음.

덧붙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도 취업제한제도의 적용대상임에도⁶⁾ 개정안은 운영자가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는 중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 경력자 중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와 취업자등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처럼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과 체계의 면밀성, 형사사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며 형 선고 시에 병과되는 이수명령의 경우, 이행 지시 불응에 따른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경고 후에도 이행 지시에 불응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⁷⁾,

-
- 6)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7)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제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에 대한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제도, 그리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자에 대한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8), 「노인복지법」 9),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10)에서는 취업제한 명령 선고사실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 없음.

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제65조(벌칙)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9)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여성가족부는 신고 기한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부과권자가 취업제한 명령 시점(판결 일자)을 확인할 수 없어 집행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라는 우회적인 방안보다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유사한 취업제한제도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법 체계적 통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참고자료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